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02)731-6156 / 전송(02)731-6562
 처리부서: 법무담당관(시청본관 3층)/ 법무담당관 박동봉 법제담당사무관 구분상 담당 이순재

문서번호 법무 11010-**366**
 시행일자 1999. 8. **23**. (년)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영구	2001. 1. 23	
기획예산실	전 결		
법무담당관	박동봉	●법제담당사무관 구분상	
★ 기안	이순재		협조

제목 주택건설사업등관련합리적부담부과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발령

1. 서울특별시주택건설사업등관련합리적부담부과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

- 가. 발령예정일 : '99. 8. 25.(수)
- 나. 일련번호 : 서울특별시훈령 제905호

훈령제 905 호

- 첨부 : 1. 발령목록 1부.
 2. 발령안 각1부. 끝.

서울특별시장

(제2안)

수신 : 홍보담당관
 제목 : 시보 게재 의뢰

1. 서울특별시주택건설사업등관련합리적부담부과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예정일 : '99. 8. 25.(수)

나. 일련번호 : 서울특별시훈령 제905호

첨부 : 1. 발령목록 1부.
2. 발령안 각2부. 끝.

법 무 담 당 관

(제3안)

수신 : 주택기획과장

제목 : 훈령 발령 통보

1. 서울특별시주택건설사업등관련합리적부담부과에관한규정중개정규
정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
하여 발령하도록 조치하였으니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예정일 : '99. 8. 25.(수)

나. 일련번호 : 서울특별시훈령 제905호

첨부 : 발령목록 각1부. 끝.

법 무 담 당 관

훈령 발령 목록

□ 총 1 건 (개정)

연 번	법 규 명	번호	주 관 부 서
1	서울특별시주택건설사업등관련합리적부담부과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	제905호	주택기획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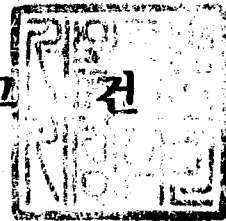
2014. 11. 20
기획예산실장

서울특별시주택건설사업등관련합리적
부담부과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9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고



서울특별시주택건설사업등관련합리적부담부과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제12차 규제개혁위원회('99. 6. 17) 심사결과 훈령 제명을 개칭하도록 결정되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명변경(안 제명)

서울특별시주택건설사업등관련합리적부담부과에관한규정

⇒서울특별시주택건설사업등관련부담부과에관한규정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나. 기 타 : 제12차 규제개혁위원회('99. 6. 17) 심사필.

기타사항

서울특별시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도로공사장교통관리규정 폐지규정안

서울특별시도로공사장교통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외예산실장

관인생략

서울특별시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 전화(02)3707-8213-4/전송 3707-8229
 처리부서:주택기획과(서소문별관2층) 과장:장수길 담당사무관:최압송 담당:류인오

문서번호 주기 58510 - 1938

시행일자 '99.8.08.04.

(경유)

수신 기획예산실장

참조 법무담당관

선결			지시	
접수	일자	1999. 8. 4.	결재	주택담당사무관
	번호	2136		기획예산실장
처리과			공람	주택담당사무관
담당자				법제심사담당사무관

제목 주택건설사업등관련 합리적 부담부과에 관한규정개정(안) 발령의뢰

1. 서울특별시 훈령 제868호('98.1.26) 및 조칙 05090-530('99.7.5)호"제11,1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통보"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훈령 제868호"주택건설사업등관련 합리적 부담부과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훈령제목을 개칭하였기 발령을 의뢰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훈령개정안 내용 >

훈령번호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868호 ('98.1.26)	제목 :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사업등관련합리적부담부과에 관한규정	제목 :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사업등관련부담부과에 관한규정	규제개혁위원회심사결과훈령제목을 개칭토록 결정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제12차 '99.6.17)

연번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정비계획
1	진입로설치 부담부과 기준 (제5조)	간선시설(진입로등)의 설치 부담부과는 당해사업과 직접관련 있는 부분에 한 하여야 함.	<준치> 나만 훈령의 제목중"합리적"이라는 부분을 삭제 하여 훈령 제목을 개칭

붙임 1. 주택건설사업등관련 합리적 부담부과에 관한규정 1부.

2. 제11,1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통보 공문사본1부. 끝.

서울특별시장

전결 주택국장 양갑

서울특별시훈령 제 868 호

서울특별시주택건설사업등관련합리적부담부과에관한규정안

'98. 1. 26

시·군·구·읍·면·동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주택건설사업등관련합리적부담부과에관한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및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승인등에 따른 부담을 합리적으로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이 행하는 모든 행정행위(이하 "사업계획등의 승인"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부담 부과시 내용상 기준) 사업계획등의 승인권자는 사업계획등의 승인을 위한 부담 부과시 그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합법성 : 주택건설촉진법령·도시재개발법령 및 관련 조례·규칙 등 관계법규와 이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소송·행정심판·시정권고 등 별표의 관련 사례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2. 합리성 : 법의 취지 및 사회통념상 적합하여야 한다.
3. 비례성 : 간선시설등의 부담은 공익과 그 부담으로 인한 사업주체의 불이익간에는 상당한 비례가 있어야 한다.
4. 실현가능성 : 부담의 이행이 법률적·기술적·물리적·사회통념상 실현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부담의 이행이 제3자와의 협의등이 전제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3자와의 협의등 사전확인절차를 거친 후 부담을 부과하여야 한다.

5. 형평성 : 지역별·시기별·규모별·형태별 등에 의한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6. 부당결부금지 : 당해 사업과 관련없는 간선시설의 설치 또는 그 비용등의 부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7. 충돌금지 : 부담 상호간의 내용이 충돌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부담 부과 절차)사업계획등의 승인권자는 사업계획등의 승인을 위한 부담 부과시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등의 승인권자는 도시계획법 제8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제2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간선시설의 설치)·제37조(간선시설 설치비용의 상환)의 내용 또는 도시재개발법 제46조(비용부담의 원칙)·제5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의 내용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재개발사업시행인가포함)전에 사업주체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등의 승인권자는 관련 기관·단체·부서와의 협의시 부과된 부담이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부적합성을 관련 기관 등에 통보, 재협의하여야 한다.
3. 부과될 부담의 적법타당성에 대하여 사전결정심의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부담이행에 따른 민원·안전사고등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재개발사업시행인가포함) 후에는 추가하여 부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의 시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진입로 등) 주택건설촉진법·도시재개발법 등의 관련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진입로 등)의 설치부담 부과는 당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교통문제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부진입로·주변도로 설치등의 부담 부과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도시계획사업 시행)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신청(사전 결정신청 포함)시 또는 도시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시 사업(시행)계획에는 진입로등 간선시설 설치계획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진입로등 간선시설 설치등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해줄 것을 사업계획등의 승인권자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승인권자가 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공탁한다.

제7조(법률 자문 등) 사업계획등의 승인시 부담부과 내용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순리적 부담이행을 위한 협약) 주요한 부담부과시 순리적 부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계획등의 승인권자와 사업주체간에 "협약"을 체결할수 있다.

제9조(면책성 부담 부과 금지) 관련기관(부서)과의 협의 또는 사업계획승인등의 절차를 집행함에 있어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신속처리)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협의기관에서는 업무를 가능한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법정처리 기한등의 이유로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점검표 작성)사업계획등의 승인권자는 사업계획등의 승인을 위한 부담 부과시 별지서식의 점검표에 의하여 부과할 부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건설사업등과 관련 부담부과에 따른 행정심판등 사례

1. 실현불가능한 부담부과(행정심판, 재결청 : 서울특별시)

- 가. 사건명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 무효확인
- 나. 사업주체 : ○○건설(주)외 1
- 다. 처분청 : ○○구청장
- 라. 분쟁청구내용(실현불능 조건으로 무효 결정)
 - “부진입도로(굴다리포함)부분을 중앙하이츠 방향의 도로와 연결될수 있도록 철도청과 협의하여 폭 10m에서 폭20m로 확장개설하여 기부채납할 것”이라는 부담은 무효임을 확인 요구
- 마. 결과 : 불확실한 철도청과의 협의를 전제로한 조건을 부여한점 등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조건으로 무효 결정 ('97. 11. 27)

2. 비례성을 위반한 과도한 부담부과(행정소송, 대법원)

- 가. 사건명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 일부 취소
- 나. 원고 (피 상고인) : ○○○○ ○○○○ 주택조합
- 다. 피고 (상고인) : ○○구청장
- 라. 판결요지('94. 1. 25. 상고기각 판결) : 도로개설 기부채납 조건이 과도하여 그부담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하여 사업자의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가 훨씬 심대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함.

3. 재량권이 아닌 부담부과(감사원 지적 된 내용)

가. 피 감사기관 : ○○시청('97. 5. 23)

나. 지적내용 (건교부 주관 58507-3751호 '97. 10. 14)

- 주축법 등 관계법령에 간선시설인 진입도로중 200M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설치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주체가 대신 설치할 경우에도 사업주체와 상환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이를 사업주체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지자체장의 재량권이 아님은 물론이고

- 또한 사업주체가 사업형편상 위설치비용을 감수하고 사업을 강행할 경우라도 이를 분양가에 포함시켜 입주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될것임.

4. 부당결부금지 및 비례성원칙 위반부담부과(국민고충처리위원회시정권고)

가. 사건명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토지기부채납조건 취소

나. 처분청 : ○○구청장

다. 시정권고 요지 :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중 “도로확보구간의 사유지가 있을때에는 기부채납 할 것”의 조건은 이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라. 이유 (토지기부채납 조건취소) : 진입도로와 관련 적용되는 사안에 있어 구체적으로 기부채납하여야할 대상을 규율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는 아무관련이 없는 토지임에도 사업계획 승인에 편승하여 기부채납토록 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부당한 부과.

가. 사건명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 변경

나. 처분청 : ○○구청장

다. 시정권고 요지 : “사도부분 포함 6m 도로확보후 포장하여 기부채납할 것”에 대해 사도부분을 제외하고 기부채납하도록 승인조건을 변경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라. 이유 (사업계획 승인조건 변경) : 조건부분의 사도는 이미 공로로 사용해 왔던 건축법상 도로 이므로 신청인이 공공용으로 매입·수용해야할 법적의무가 없고, 피 신청인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도로포장을 하여 일반공중에 제공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시 기부채납 토목 조건을 부과한 것은 부당.

가. 사건명 : 주택건설사업계획 인가조건 취소

나. 처분청 : ○○구청장

다. 시정권고요지 : 재개발 사업인가 조건중 “폭 12m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미개설 되어 있으므로 도로개설요망”이라는 인가조건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라. 이유(재개발 사업인가 조건시정) :

폭12m의 도시계획도로는 사업계획구역내에 위치하지도 아니할 뿐만아니라 신청인에게 무려 18여억원을 부담시키는것은 재개발 사업을 빌미로 상대방에게 전가한 행위는 상당성의 원칙등에 반하는 부당한 조건으로 처분취소

< 별지서식 >

주택건설사업등관련합리적부담부과를위한점검표

사업위치 : 구 동 번지

사업주체 :

사업명 :

순위	항 목	근거조항	검 점 기 준	적합여부
1	부담 부과시 내용상 기준	제3조	<p><부담 부과시 내용상 기준></p> <p>1. 합법성 : 주택건설촉진법령·도시재개발법령 및 관련 조례·규칙 등 관계법규와 이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소송·행정심판·시정권고 등 별표의 관련 사례와 비교 검토함.</p>	
2	"	"	<p>2. 합리성 : 법의 취지 및 사회통념상 적합함.</p>	
3	"	"	<p>3. 비례성 : 간선시설등의 부담은 공익과 그 부담으로 인한 사업주체의 불이익간에는 상당한 비례가 있어야함.</p>	
4	"	"	<p>4. 실현가능성 : 부담의 이행이 법률적·기술적·물리적·사회통념상 실현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부담의 이행이 제3자와의 협의등이 전제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3자와의 협의등 사전확인절차를 거친 후 부담을 부과함.</p>	
5	"	"	<p>5. 형평성 : 지역별·시기별·규모별·형태별 등에 의한 형평성이 유지 되어야함.</p>	

순위	항 목	근거조항	점 검 기 준	적합여부
6	부담 부과시 내용상 기준	제3조	6. 부담결부금지 : 당해 사업과 관련없는 간선시설의 설치 또는 그 비용등의 부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됨.	
7	"	"	7. 충돌금지 : 부담 상호간의 내용 이 충돌하여서는 아니됨. < 부담 부과 절차 >	
8	부담 부과 절차	제4조	1. 사업계획동의 승인권자는 도시제 획법 제8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간 선시설의 설치)·제37조(간선시설 설치비용의 상환)의 내용 또는 도시 재개발법제46조(비용부담의 원 칙)·제5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의 내용을 주택건설사업계획승 인(재개발사업시행인가포함)전에 사업주체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함.	
9	"	"	2. 사업계획동의 승인권자는 관련 기관·단체·부서와의 협의시 부과 된 부담이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부적합성을 관련 기관 등에 통보, 재협의함.	
10	"	"	3. 부과될 부담의 적법타당성에 대 하여 반드시 사전결정심의위원회 또 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순위	항 목	근거조항	점 검 기 준	적합여부
11	부담 부과 절차	제4조	4. 부담이행에 따른 민원·안전사고 등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이를 조정하여야 함.	
12	"	"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재개발사업시행인가포함) 후에는 추가하여 부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의 시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3	진입로 등	제5조	○주택건설촉진법·도시재개발법 등의 관련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진입로 등)의 설치부담 부과는 당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교통문제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부진입로·주변도로 설치등의 부담 부과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4	도시계획 사업 시행	제6조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신청(사전결정신청 포함)시 또는 도시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시 사업(시행)계획에는 진입로등 간선시설 설치계획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진입로등 간선시설 설치등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해줄 것을 사업계획등의 승인권자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승인권자가 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공탁함.	

순위	항 목	근거조항	점 검 기 준	적합여부
15	법률 자문등	제7조	○사업계획등의 승인시 부담부과 내용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자문을 받음.	
16	순리적 부담이행을 위한 협약	제8조	○주요한 부담부과시 순리적 부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계획등의 승인권자와 사업주체간에 "협약"을 체결할수 있음.	
17	면책성 부담 부과 금지	제9조	○관련기관(부서)과의 협의 또는 사업계획승인등의 절차를 집행함에 있어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됨.	
18	신속처리	제10조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협의기관에서는 업무를 가능한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법정처리 기한등의 이유로 지연하여서는 아니됨.	

점검자 : 담당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담당계장 직 성명 (인)
 " : 담당과장 직 성명 (인)

서울특별시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 전화(02)3707-8213-4/전송 3707-8229
 처리부서:주택기획과(서소문별관2층) 과장:장수길 담당사무관:최암송 담당:류인오

문서번호 주기 58510 - (578)
 시행일자 '99. 7.
 (경유) 1999. 08. 04.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서울특별시	
보존		양	
주택국장	전결		
주택기획과장	장수길	조직제도담당관 26351 10-1361 법무담당관실사관 주택사업담당사무관 최암송	
기안	류인오		협조

제 목 주택건설사업등관련 합리적부담부과에 관한규정(안) 개정

1. 서울특별시 훈령 제868호('98.1.26) 및 조직 05090-530('99.7.5)호"제11,12차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 통보"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훈령 제868호"주택건설사업등관련 합리적 부담부과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훈령제목을 개칭코자 합니다.

< 훈령개정(안) 내용 >

훈령번호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868호 ('98.1.26)	제목 : 서울특별시 주택 건설사업등관련합리적부 담부과에 관한규정	제목 : 서울특별시 주 택건설사업등관련부담 부과에 관한규정	규제개혁위원회의심사결 과훈령제목을 개칭토록 결정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제12차 '99.6.17)

연번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정비계획
1	진입로설치 부 담부과 기준 (제5조)	간선시설(진입로등)의 설치 부 담부과는 당해사업과 직접관련 있는 부분에 한 하여야 함.	<준치> 다만 훈령의 제목중"합리적" 이라는 부분을 삭제 하여 훈 령 제목을 개칭

- 붙임 1. 주택건설사업등관련 합리적 부담부과에 관한규정 1부.
 2. 제11,1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통보 공문사본1부. 끝.

< 제2안 >

수신 : 기획예산실장

참 조 : 법무담당관

제 목 : 주택건설사업등관련 합리적 부담부과에 관한규정개정(안) 발령의뢰

1. 서울특별시 훈령 제868호('98.1.26) 및 조직 05090-530('99.7.5)호"제11,12차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 통보"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훈령 제868호"주택건설사업등관련 합리적 부담부과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훈령제목을 개칭하였기 발령을 의뢰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훈령개정안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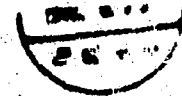
훈령번호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868호 ('98.1.26)	제목 : 서울특별시 주택 건설사업등관련합리적부 담부과에 관한규정	제목 : 서울특별시 주 택건설사업등관련부담 부과에 관한규정	규제개혁위원회의심사결 과훈령제목을 개칭토록 결정

※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제12차 '99.6.17)

연번	규제사무명	규 제 내 용	정 비 계 획
1	진입로설치 부 담부과 기준 (제5조)	간선시설(진입로등)의 설치 부 담부과는 당해사업과 직접관련 있는 부분에 한 하여야 함.	<큰지> 다만 훈령의 제목중"합리적" 이라는 부분을 삭제 하여 훈 령 제목을 개칭

붙임 1. 주택건설사업등관련 합리적 부담부과에 관한규정 1부.

2. 제11,12차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 통보 공문사본1부. 끝.



서울특별시장

전전 주택국장 양갑

서울특별시주택건설사업등관련합리적부담부과에관한규정증개정규정안

초청심사	1999. 8. 6	제 // 호
담당자	법제심사팀안사무원	법무담당관
송신처	구본영	박달봉

1. 개정이유

제12차 규제개혁위원회('99. 6. 17) 심사결과 훈령 제명용 개칭하도록 결정되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명변경(안 제명)

서울특별시주택건설사업등관련합리적부담부과에관한규정

⇒서울특별시주택건설사업등관련부담부과에관한규정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나. 기 타 : 제12차 규제개혁위원회('99. 6. 17) 심사필.

관인생략

서울특별시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31/ 전화 (02) 731-6151~4 / 전송 (02) 731-6309
처리부서 : 조직제도담당관(본관4층) 과장 정효성 / 규제개혁사무관 신상철 / 담당 최승대

문서번호 조직05090-530

시행일자 1999. 7. 5

(경유)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선	과	장	장수길	지	
결	절	일자	99. 7. 6	시	
	수	번호	2010	결	규제개혁사무관 김수동
	처	리	과	재	규제개혁사무관 김상철
	담	당	자	공	규제개혁사무관 김성관
				람	규제개혁사무관 신상철

제목 제11, 1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통보

1. 제11차, 제1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따로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심사결정된 과제에 대한 조례·규칙등 자치법규의 폐지, 개정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후속조치 완료 후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각 부서는 산하기관 및 관련단체·협회 등 이해관계인들에게도 적극 홍보, 전파하여 규제개혁의 내용을 이해하고 규제개혁 작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상위법령의 폐지 및 개정에 따른 규제사무는 즉시 운영중단하고 관련 조례·규칙을 정비하기 바랍니다.

첨 부 : 제11, 1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1부. 끝.

서울특별시

전결 조직제도담당관 정효성

061

수신처 : 서과01-75, 서본부01-03, 서구01-25

Handwritten signatures and notes:
이명박 (Mayor)
정효성 (Director)
신상철 (Officer)
김수동 (Officer)
김성관 (Officer)
이영 (Officer)

□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 2건(존치1, 개선1)

연번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정비계획
1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제5조)	1. 상업·공업지역에서의 옥상 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m 이상	< 개선 > ○ 옥외광고물의 이격거리는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보 호차원에서 구분하여 제한 · 전광판, 네온간판 : 50m 이상 · 내부조명, 화공간판 : 30m 이상
2	영업정지등의 처분기준 (제15조)	1.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2에 규정	< 존 치 > ○ 상위법에서 근거규정이 존치되었으므로 존치

□ 주택건설사업등 관련 합리적부담금 부과에 관한 규정 - 1건(존치1)

연번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정비계획
1	진입로설치부담 부과기준 (제5조)	간선시설(진입로등)의 설치부담 부과는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부분에 한하여야 함	< 존 치 > ○ 다만 혼령의 제목중 " <u>합리적</u> " 이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u>혼령제목을 개칭</u>

발재
1998. 7. 1
부시장